

대구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가단1334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양동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3. 26.
판 결 선 고 2021. 5.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12. 3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0. 7. 2. 접수 제257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7차전1061 양수금 사건에서 2017. 6. 30. 'C은 원고에게 7,167,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11. 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7. 10. 2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의 부 D는 2019. 12.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과 자녀들인 C, 피고, F, G이 있다.

다. 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하여 2020. 7.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25758호로 2019. 12.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C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는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경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H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2019. 12. 31.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2/11 지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2/11 지분)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이 형제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는 C이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사업자금을 증여받아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은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한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대규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경상북도 경산시 대 353㎡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관할, 353분의 233 지분)

